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의 명칭 변경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2288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 개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2
1.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의 명칭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제도로 변경	2
2. 재난안전신기술·신제품 지정 취소 사유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추가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 마련	12

I. 개 요

1. 제안경위

- (1) 제 출 자 : 정부 제출
- (2) 제출연월일 : 2025. 8. 21.
- (3) 회부연월일 : 2025. 8.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신제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며,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신기술 및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취소 사유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II. 검토의견

1.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의 명칭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제도로 변경

개정안은 현행법 상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안전신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며, 관련 조문들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u>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u>	제16조(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등) ① <u>행정안전부장관은 품질·성능이 우수하고 재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는 효과가 큰 재난안전제품을 재난안전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u>
② <u>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② <u>재난안전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u> -----.
③ <u>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u>신청서 및 관련 서류</u>를 제출하여야 한다.</u>	③ <u>재난안전신제품 지정 또는 지정 -----</u> ----- ---- <u>그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u> -----.
④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u>인증기준에</u> 적합한</u>	④ ----- <u>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u>

현행	개정안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u>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u>인증제품</u>”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u>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u>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인증의 기준·대상·절차·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u>인증제품의 사후관리</u>)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u>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19조(<u>우선활용 권고 등</u>) ① 행정안	----- ----- <u>재난안전신제품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u> ----- ----- ----- -----. ⑤ 제4항에 따라 <u>재난안전신제품</u>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 ----- ----- <u>재난안전신제품</u>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u>재난안전신제품 지정</u> ----- ----- -----. ⑥ ----- ----- <u>재난안전신제품 지정</u> ----- ----- ----- -----. 제17조(<u>재난안전신제품의 사후관리</u>) ① ----- <u>재난안전신제품</u> 지정의 --- <u>재난안전신제품</u> -----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u>우선활용 권고 등</u>) ① -----

현행	개정안
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기술이나 <u>인증제품</u> 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 ----- <u>재난안전신제품</u> ----- -----.
② 제1항에 따라 <u>인증제품</u> 또는 <u>신기술을 활용한 제품</u> 을 구매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u>인증제품</u> 또는 <u>신기술을 활용한 제품</u> 의 구매나 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 <u>재난안전신제품</u> 또는 <u>신기술을 활용한 제품</u> ----- ----- ----- ----- ----- ----- <u>재난안전신제품</u> 또는 <u>신기술을 활용한 제품</u>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이나 <u>인증제품</u> 의 우선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 <u>재난안전신제품</u> ----- ----- -----.
제2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수수료) ----- ----- ----- -----

현행	개정안
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3항에 따른 <u>인증</u> 또는 <u>인증</u> 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2. ----- <u>재난안전신제품 지정 또는 지정</u> -----
제25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청문)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제1항에 따른 <u>인증</u> 의 취소	4. ----- <u>재난안전신제품 지정</u> -----
제26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업무의 위탁)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6조에 따른 <u>인증</u> 및 제17조에 따른 <u>인증제품</u> 의 사후관리	6. ----- <u>재난안전신제품 지정 및</u> ----- -- <u>재난안전신제품</u> -----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	제28조(벌칙) -----

현행	개정안
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u>인증</u> 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 1. (현행과 같음) 2. ----- <u>재난안전</u> <u>전신제품 지정</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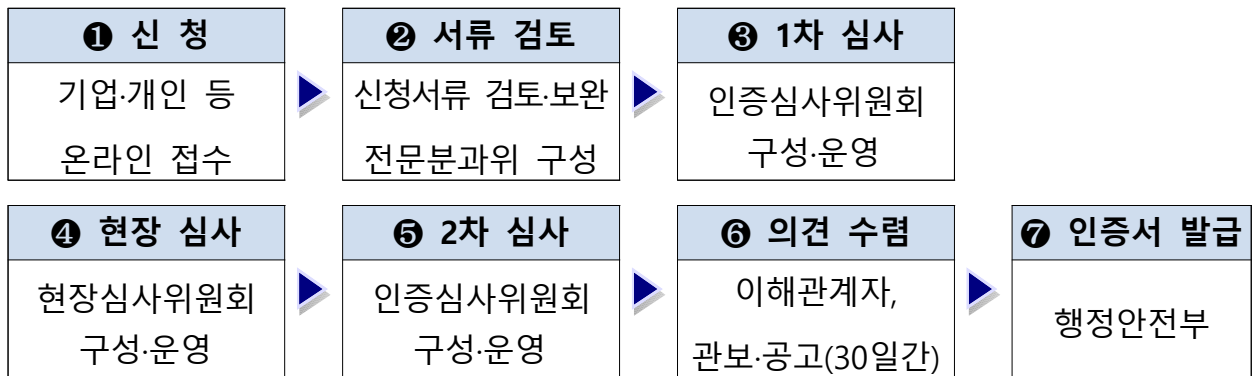
현행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국민안전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을 인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에 따른 법정 인증이나, 법적인 의무는 아닌 임의인증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¹⁾.

현행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해당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인증 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있고²⁾,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인증 심사 업무를 위탁하여 연 2회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3년 동안 유효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³⁾.

- 1)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지고, 조달청 우수 제품지정 심사에 가점이 부여되며, 기획재정부의 혁신제품, 중소기업벤처부의 우선구매대상 제품 지정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인센티브가 있음.
-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2.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3.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②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2. 재난안전제품의 효율성, 사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③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재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3년 간 추가로 연장 가능함.

인증 심사는 서류·면접 심사(1차 인증심사), 현장 심사, 종합 심사(2차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 신청된 제품의 사용 적합성, 우수성, 신뢰성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현행법이 시행된 2023년 이후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건수는 총 137건임.

[재난안전제품 인증 절차]



(자료 : 행정안전부)

[2023~2025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현황]

연도		신청	1차 인증심사		현장심사		2차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율 (%)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23년	계	365	92	273	52	40	52	0	52	14.2
	신규	338	69	269	40	29	40	0	40	11.8
	연장	7	5	2	4	1	4	0	4	57.1
	물품추가	20	18	2	8	10	8	0	8	40.0
24년	계	370	81	233	60	21	54	6	54	14.6
	신규	341	55	230	36	21	32	4	32	9.4
	연장	20	18	2	16	0	14	2	14	70.0
	물품추가	9	8	1	8	0	8	0	8	88.9
25년	계	164	45	119	32	13	31	1	31	18.9
	신규	139	20	119	10	10	9	1	9	6.5
	연장	22	22	0	20	2	20	0	20	90.9
	물품추가	3	3	0	2	1	2	0	2	66.7

(자료 : 행정안전부, 2025. 6.30. 기준)

※ 물품추가 : 기존에 인증받은 유효기간 내 인증제품과 기능, 성능이 동등하나 일부 변경된 물품을 추가 인증받는 것으로 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기산

※ 2022년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인증제도 운영

그런데 현행 인증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적합성, 우수성, 신뢰성 및 안전성 등 정성적인 기준을 주로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으면서도, 정량적인 기준을 주로 활용하는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관련 재난안전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재난안전산업 분야 기업에게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난안전제품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제도의 취지 및 구체적 내용에 맞게 제도의 명칭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다른 제품 인증 제도와 동 제도를 구별하고, 제품 인증을 받아야만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하다는 재난안전산업 기업들의 오해를 방지하여 재난안전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우나, 실정법 상 용례를 살펴보면, 주로 ① 허가·인가·특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② 행정업무를 대행·위탁하는 등 행정업무 부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③ 지원·육성대상 선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⁴⁾.

반면, ‘인증’은 정부, 공공기관 등이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

4)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24.5., P.349.

으로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규제를 위한 인증, 진흥을 위한 인증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진흥을 위한 인증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정’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음⁵⁾.

[제품 인증과 지정 비교]

구 분	「인증」(Certification)	「지정」(Designation)
개념	제품의 성능·품질 등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했는지 검증·확인하는 제도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우수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
목적	제품의 성능·품질에 대한 공신력 확보	우수제품 개발·보급 촉진 등 정책 목적 달성
기준	성능·품질·규격 등에 대한 정량기준	우수성, 효과성, 경제성 등 정성기준
효과	의무인증의 경우 인증 제품만 생산·유통 가능	지정 여부 홍보, 수의계약 등 혜택 ※ 제품 생산·유통 여부와 무관
입법례	① 의무 소방용품 형식 승인 (소방시설법) ※ 소화능력 등 성능, 구조, 재질 등 정량평가	① 임의 소방신기술·신제품 지정 (소방산업진흥법) ※ 신규성·우수성 등 정성평가
	② 임의 KS 한국산업표준 인증 (산업표준화법) ※ 사용시간 등 성능, 규격 등 정량평가	② 임의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농업기계화촉진법) ※ 기술성·경제성 등 정성평가
	③ 의무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어린이제품법) ※ 물리적, 기계적, 화학적 안전성 등 정량평가	③ 임의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 (물산업진흥법) ※ 우수성, 공급 안정성 등 정성평가

(자료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은 위 유형 중 품질·성능의 우수성과 재난·사고로부터 생명·재산 보호 효과성이 높은 신제품을 지원·육성 대상으로 선정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재난안전제품 개발·보급 촉진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고려한 명칭 변경이라고 볼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신제품 개발·보급 지원을 위해

5)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24.5., P.354.

제품의 우수성, 효과성 등을 정성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써 실질적으로 ‘인증’과는 그 취지와 성격이 다르고, ‘인증’ 명칭 사용으로 소방용품 형식승인 등 다른 법정 의무인증과 혼선이 있으며, 임의인증 제도임에도 인증을 받아야만 제조·유통이 가능하다는 오해가 발생하여 제도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둘째, 지정의 대상을 ‘재난안전신제품’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지정 요건을 고려하여 ‘재난안전우수제품’의 지정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서는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요건으로 품질·성능의 우수성과 재난·사고로부터 생명·재산 보호 효과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여 현행 인증 심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에 반영하고 있는데, 지정 요건에서 따로 제품의 신규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난안전우수제품’에 대한 지정으로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의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제도의 경우, 지정을 받으려는 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신규성을 요구하고 있음⁶⁾.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제품의 신규성의 경우 이미 조문 제목에 ‘신제품’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통해 지정 요건 및 의미가 이미 내포

6)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으므로, 조문 내용으로 우수성과 효과성을 구체화한 것이며,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여 AI 등 첨단 기술·제품 개발·보급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우수제품’보다는 ‘신제품’ 명칭이 적합하다는 입장임.

참고

재난안전제품 인증 심사 기준

- **(1차심사)** 인증심사위원회 **10~15명**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심사결과 평균 **70점이상** 적합 의결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적합성(40)	재난안전사용가능성, 재난안전보호정도, 안전기준충족도, 재난안전적합도
우수성(40)	기술수준우수성(15), 기술의적용성(15), 차별성(10)
신뢰성·안전성(10)	극한 재난상황에서 신뢰성 유지 및 안정성 정도
경제적효과성(10)	시장 파급력, 가격 경쟁력 정도

- **(현장심사)** 현장심사위원회 **3명 이상** 구성(품질보증시스템 전문가 1명, 1차 심사위원장 포함), **2/3이상** 찬성으로 적합 의결

평가항목	평가 기준
우수성	핵심기술 구현내용 및 제품 우수성
적절성	제품성능 평가항목의 적절성
국산화정도	핵심 부품 및 주요 부품 국산화 정도
안전성	신청제품의 안전성
기 타	품질경영 체계 구축 여부

- **(2차심사)** 인증심사위원회 **10~15명** 구성(1차위원장 포함),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적합 의결

평가항목	평가 기준
종합심사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 평가

2. 재난안전신기술·신제품 지정 취소 사유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추가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 마련

개정안은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보완하고(안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 재난안전신기술과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취소 사유로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면서(안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지정 취소라는 규제를 3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① · ② (생략) ③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u>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u> 한다.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그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u>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u>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u>	④ ----- <u>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u> ----- ----- ----- ----- ----- -----

현행	개정안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u>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기술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⑦ (생략)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u>신기술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18조(<u>인증의 취소</u>)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u>인증을 받은 자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u>인증을 취</u>	-----. ⑤ ----- ----- <u>홍보할</u>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① ----- <u>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u> ----- -----. 1. ~ 5. (현행과 같음) 6. <u>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가 신기술의 성능·효과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u>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취소 등</u>) ① ----- ----- <u>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제품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안

현행	개정안
소하여야 한다. 1. <u>거짓</u>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인증을</u> 받은 경우 2. <u>인증</u>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생략) 4. 업종변경·폐업 등으로 인하여 <u>인증제품</u>의 생산·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u>인증</u>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u>전신제품 지정</u>을 ---. ---- <u>지정</u>-----. 1. <u>거짓이나</u> ----- -- <u>재난안전신제품 지정</u>----- ----- 2. <u>지정</u> ----- --- 3. (현행과 같음) 4. ----- <u>재난안전신제품</u>----- ----- 5. (현행과 같음) 6. <u>재난안전신제품 지정</u>을 받은 자가 <u>재난안전신제품의 품질·성능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u> ② ----- <u>재난안전신제품 지정</u>----- -----. <u>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u>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u>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기</u>

현행	개정안
	<u>술 지정의 취소: 2026년 1월 1일</u> <u>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난</u> <u>안전신제품 지정의 취소: 2026년</u> <u>1월 1일</u>

현행법은 재난안전신기술 지정과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취소해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열거하고 있는데, 주로 기술이나 제품의 개발·생산 과정이나 지정 또는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의 개발 또는 제품의 생산 이후 기술의 활용이나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의 성능·효과나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해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내지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술이나 제품을 소비하는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고 신기술 지정이나 제품 인증 제도의 공신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음⁷⁾.

따라서 개정안은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재난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 각각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취소 및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7)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터리 화재 초기 진화에 일부 효과가 있는 인증 제품을 세계 최초로 인증받은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로 과장하여 홍보하고 판매한 사례가 있음.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여 규제를 강화하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규정⁸⁾을 도입하고 재검토기한⁹⁾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정 취소 사유의 추가로 권익 제한의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마다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는 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9

- 8)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규제의 재검토의 실시 절차, 결과보고서의 작성·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9호)